

조경 설계 표준품셈

2021. 0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2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2
1-6 세부시행기준	2
제 2 장 기본설계	4
제 3 장 실시설계	8
제 4 장 기본 및 실시설계	12
[부록 1] 대상지 성격의 정의	16
[부록 2] 세부 업무의 정의	23



▶ 제1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1-6 세부시행기준

제 1 장 총 칙

1-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절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 ① 기본설계
- ② 실시설계
- ③ 기본 및 실시설계

단, 대규모 단지개발 등 다양한 성격의 조경사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의 경우 별도의 대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3)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당해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 4)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 5) “추가업무”란 기본업무 외에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여 과업내용서에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 6)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로 설정된 표준단위당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 7) “환산계수”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규모와 표준단위 규모의 차이에 따라 업무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 8) “보정계수”란 적용수량과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각 업무별,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 2) 각 업무별, 기술자등급별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 정하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 적용수량(단위)에 업무별 기준인원수와 보정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각 업무별, 등급별 기준인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제시된 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 1) 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6 세부시행기준

- 1) 이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수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표준품셈은 2022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2장 기본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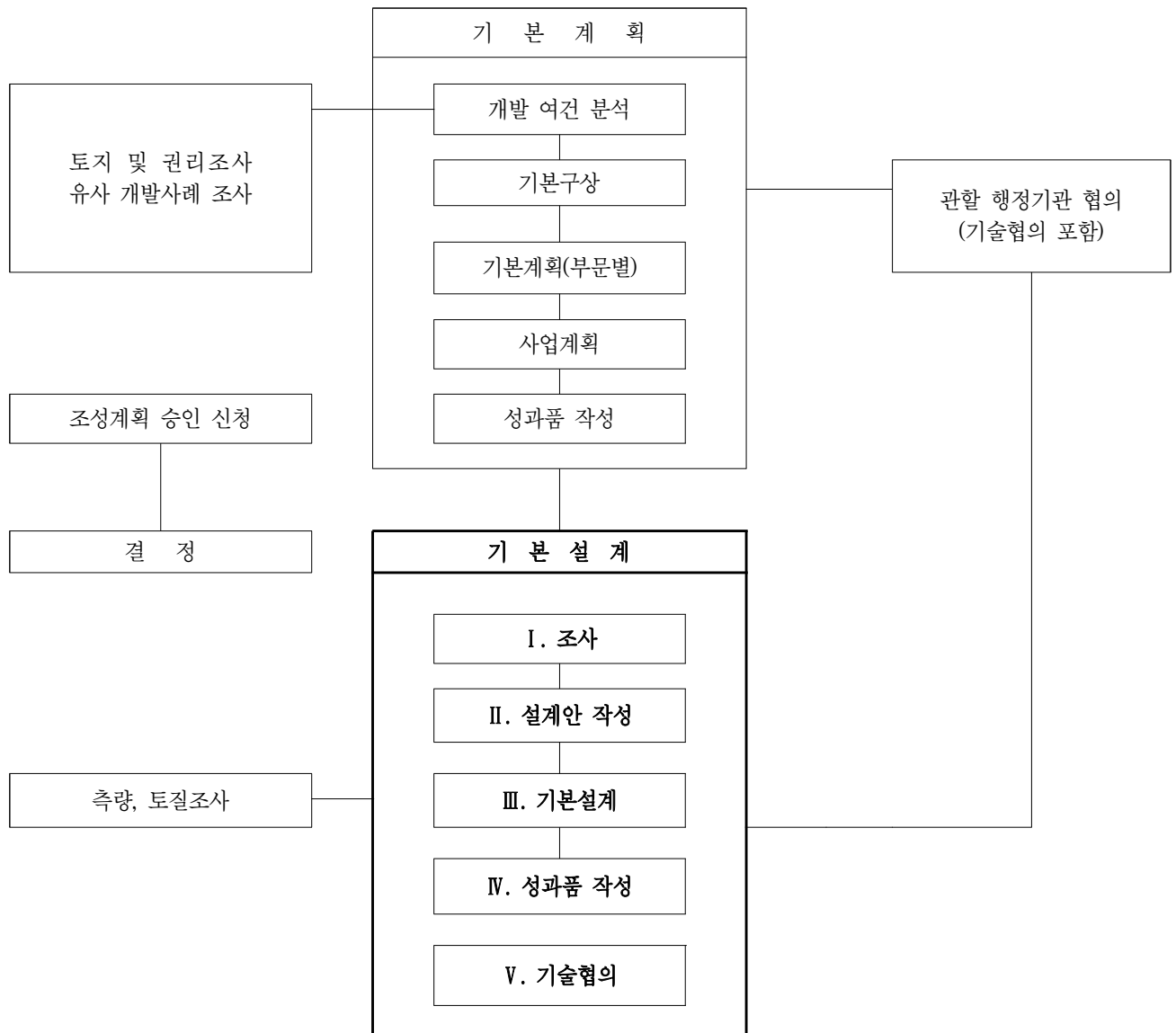
제 2 장 기본설계

가. 정의

조경사업의 “기본설계”란 도시공원,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녹지, 주제형 사업 등 대상지 성격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과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4호를 의미한다.

나. 추진절차

조경사업의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다.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 업무		업무 정의
I. 조사	1. 각종 조사 등	1) 현지 조사 및 답사 2) 자연 환경조사·분석 3) 인문 환경조사·분석 4) 유사 사례 조사·분석 5) 종합분석
II. 설계안 작성	1. 대안작성 · 선정	1) 도입 활동 및 시설선정 2) 공간 배치구상 3) 대안 작성·비교 검토·확정 * 대안작성·선정업무는 기본설계 등 전 단계 업무의 유·무에 따라 산정한다. 전 단계 성과가 있을 경우 대안작성·선정업무의 70%를 적용한다.
III. 기본 설계	1. 기반 설계	1) 지형 및 가시설 설계 2) 상하수 설계 3) 가로등(공원 등), 통신설비 설계
	2. 식재 설계	1) 대상지 성격에 따른 여건 분석 및 식재 공법 선택 2) 식재 구상도(개념도) 작성 3) 수목 선정 및 배식 설계 4) 지피·초화류 선정 및 배식 설계
	3. 시설 설계	1) 공간별 설계 2) 조경시설물 설계 3) 조경구조물 설계
	4. 포장 설계	1) 대상지별 포장재료·공법 선정 2) 포장 설계
	5. 기본공사비 산출	1) 기본수량 산출 2) 기본공사비 산출
IV.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1) 기본설계 보고서
	2. 기본설계 도서	1) 기본설계 도면 2)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V. 기술 협의	1. 위원회 심의 지원	1) VE 심사, 기술심의, 시·도 심의,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심의자료 작성 및 보고 2) 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 반영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1) 공청회·주민 설명회 등 자료 작성 2)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3. 관계기관 협의	1) 발주자 협의 및 민원 검토

주 1)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농지 협의 등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준용한다.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은 2회 기준이며, 횟수 증가에 따라 비용을 가산한다.

3) 조사측량, 토질조사, 시험품은 별도 계상한다.

4) 업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품(조감도, 영상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계상한다.

5) 업무 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2] 세부 업무의 정의’ 를 참조한다.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기본 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 계수	보정계수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대상지 성격	업무 난이도	
I. 조사	1. 각종 조사 등	5,000(m ²)	0.5	1.3	2.3	2.3	1.9	α ₁	-	-
II. 설계안 작성	1. 대안작성·선정	5,000(m ²)	3.2	4.8	3.9	2.5	1.8	α ₁	α ₂	α ₃
II. 기본설계	1. 기반 설계	5,000(m ²)	0.8	1.5	2.6	2.1	1.4	α ₁	α ₂	α ₃
	2. 식재 설계	5,000(m ²)	1.5	2.3	3.5	2.2	1.6	α ₁	α ₂	α ₃
	3. 시설 설계	5,000(m ²)	1.2	2.7	3.8	3.4	2.5	α ₁	α ₂	α ₃
	4. 포장 설계	5,000(m ²)	0.5	1.3	2.2	2.3	1.8	α ₁	α ₂	α ₃
	5. 기본공사비 산출	5,000(m ²)	0.8	1.3	2.1	1.9	1.3	α ₁	α ₂	α ₃
III.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5,000(m ²)	1.0	1.8	2.9	2.6	1.9	α ₁	α ₂	α ₃
	2. 기본설계 도서	5,000(m ²)	1.3	3.0	3.8	3.0	1.9	α ₁	α ₂	α ₃
IV. 기술협의	1. 위원회 심의 지원	1식	1.2	1.8	2.4	1.7	1.5	-	-	-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2회	0.7	1.6	2.0	1.6	1.3	-	-	-
	3. 관계기관 협의	1식	1.3	2.3	2.2	1.5	0.9	-	-	-

주 1) 기본계획 등 전 단계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1. 대안작성·선정' 업무의 70%를 적용한다.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투입인원수는 기준인원수에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1) 환산계수

$$\text{환산계수}(\alpha_1) = \left(\frac{\text{면적}^*}{5,000m^2}\right)^{0.4}, \text{ (면적이 } 5,000m^2 \text{ 이하에서도 적용)}$$

* 면적이란 조경 설계(설계안 작성, 기반·식재·시설·포장 등)에 의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말한다. 단, "I.조사" 업무의 면적은 각종 조사 등을 수행하는 면적으로 한다.

(2) 보정계수

보정계수				세부 내용
대상지 성격(α ₂)	업무 난이도(α ₃)			
도시공원	1.0	단순	0.9	소공원, 묘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도시공원 내 시설(시설물, 구조물, 포장 등) 교체사업
		보통	1.0	국가도시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재생사업)
		복잡	1.1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방재공원, 도시공원(재생사업)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	보통	1.0	공동주택 조경
		복잡	1.1	주택정원, 건축물 조경, 옥상조경(옥상정원), 실내조경(실내정원)
녹지	0.8	단순	0.9	완충 녹지, 가로변 녹지(띠녹지 등)
		보통	1.0	연결 녹지, 경관 녹지, 유희지(학교, 우수지, 자투리 땅 등) 녹화
		복잡	1.1	가로변 녹지(정원형)
주체형 사업	1.2	단순	0.9	야영장(일반, 자동차), 둘레길 사업(자연형), 하천경관 개선사업, 생태통로
		보통	1.0	테마시설 조성 사업, 관광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 가로 환경개선 사업(도시형), 농어촌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자연공원(공원시설)
		복잡	1.1	관광단지, 동물원, 골프장, 스키장, 2종 이상의 주체형 사업이 복합된 사업

주 1) 대상지 성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1] 대상지 성격의 정의' 를 참조한다.



▶ **제3장 실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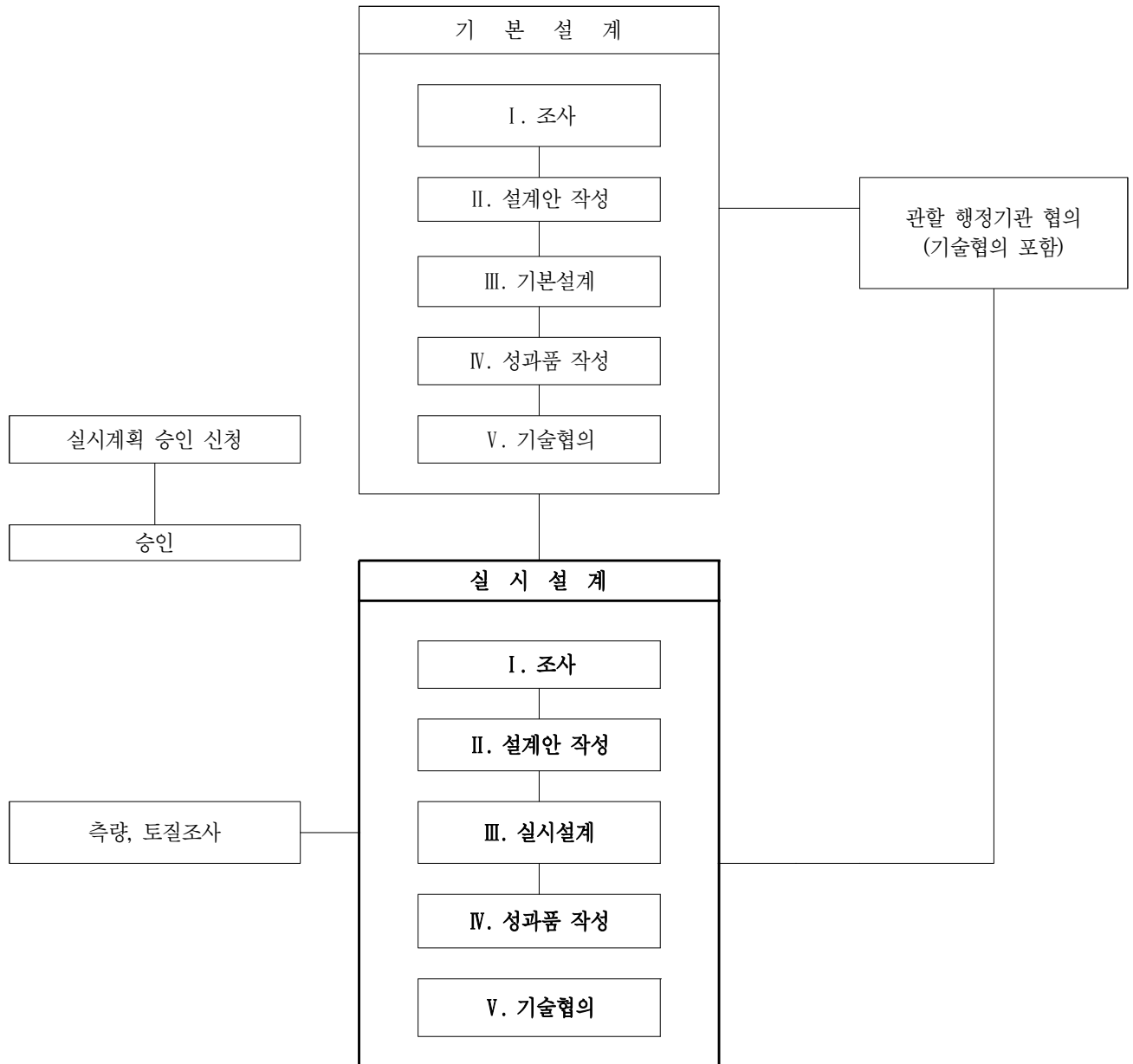
제 3 장 실시설계

가. 정의

조경사업의 “실시설계”란 도시공원,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녹지, 주제형 사업 등 대상지 성격에 따라 수립된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과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4호를 의미한다.

나. 추진절차

조경사업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다.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 업무		업무 정의
I. 조사	1. 각종 조사 등	1) 현지 조사 및 답사 2) 자연 환경조사·분석 3) 인문 환경조사·분석 4) 유사 사례 조사·분석 5) 종합분석
II. 설계안 작성	1. 대안작성 · 선정	1) 도입 활동 및 시설선정 2) 공간 배치구상 3) 대안 작성·비교 검토·확정 * 대안작성·선정업무는 기본설계 등 전 단계 업무의 유·무에 따라 산정한다. 전 단계 성과가 있을 경우 대안작성·선정업무의 70%를 적용한다.
III. 실시 설계	1. 기반 설계	1) 지형 및 가시설 설계 2) 상하수 설계 3) 가로등(공원 등), 통신설비 설계
	2. 식재 설계	1) 대상지 성격에 따른 여건 분석 및 식재 공법 선택 2) 식재 구상도(개념도) 작성 3) 수목 선정 및 배식 설계 4) 지피·초화류 선정 및 배식 설계
	3. 시설 설계	1) 공간별 상세 설계 2) 조경시설물 설계 3) 조경구조물 설계
	4. 포장 설계	1) 대상지별 포장재료·공법 선정 2) 포장 설계
IV.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1) 실시설계 보고서
	2. 실시설계 도서	1) 설계설명서 및 예산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설계내역서 5) 단가산출서 6) 수량산출서
V. 기술 협의	1. 위원회 심의 지원	1) VE 심사, 기술심의, 시·도 심의,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심의자료 작성 및 보고 2) 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 반영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1) 공청회·주민 설명회 등 자료 작성 2)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3. 관계기관 협의	1) 발주자 협의 및 민원 검토

주 1)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농지 협의 등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준용한다.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은 2회 기준이며, 횟수 증가에 따라 비용을 가산한다.

3) 조사측량, 토질조사, 시험품은 별도 계상한다.

4) 업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품(조감도, 영상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계상한다.

5) 업무 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2] 세부 업무의 정의’ 를 참조한다.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기본 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 계수	보정계수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대상지 성격	난이도	
I. 조사	1. 각종 조사 등	5,000(m ²)	1.0	2.5	4.4	4.4	3.8	α ₁	-	-
II. 설계안 작성	1. 대안작성·선정	5,000(m ²)	6.0	9.1	7.3	4.9	3.3	α ₁	α ₂	α ₃
II. 실시설계	1. 기반 설계	5,000(m ²)	1.6	2.9	5.1	4.1	2.6	α ₁	α ₂	α ₃
	2. 식재 설계	5,000(m ²)	2.8	4.5	6.9	4.3	3.1	α ₁	α ₂	α ₃
	3. 시설 설계	5,000(m ²)	2.3	5.2	7.3	6.5	4.9	α ₁	α ₂	α ₃
	4. 포장 설계	5,000(m ²)	0.9	2.4	4.3	4.4	3.6	α ₁	α ₂	α ₃
III.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5,000(m ²)	2.0	3.5	5.7	5.0	3.6	α ₁	α ₂	α ₃
	2. 실시설계 도서	5,000(m ²)	2.5	5.9	7.3	5.7	3.7	α ₁	α ₂	α ₃
IV. 기술협의	1. 위원회 심의 지원	1식	2.2	3.6	4.6	3.3	2.8	-	-	-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2회	1.2	3.2	3.9	3.1	2.5	-	-	-
	3. 관계기관 협의	1식	2.5	4.4	4.3	3.0	1.7	-	-	-

주 1) 기본계획 등 전 단계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1. 대안작성·선정’ 업무의 70%를 적용한다.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투입인원수는 기준인원수에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1) 환산계수

$$\text{환산계수}(\alpha_1) = \left(\frac{\text{면적}^*}{5,000m^2}\right)^{0.4}, \text{ (면적이 } 5,000m^2 \text{ 이하에서도 적용)}$$

* 면적이란 조경 설계(설계안 작성, 기반·식재·시설·포장 등)에 의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말한다. 단, “I.조사” 업무의 면적은 각종 조사 등을 수행하는 면적으로 한다.

(2) 보정계수

보정계수		세부 내용		
대상지 성격(α ₂)	업무 난이도(α ₃)			
도시공원	1.0	단순	0.9	소공원, 묘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도시공원 내 시설(시설물, 구조물, 포장 등) 교체사업
		보통	1.0	국가도시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재생사업)
		복잡	1.1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방재공원, 도시공원(재생사업)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	보통	1.0	공동주택 조경
		복잡	1.1	주택정원, 건축물 조경, 옥상조경(옥상정원), 실내조경(실내정원)
녹지	0.8	단순	0.9	완충 녹지, 가로변 녹지(띠녹지 등)
		보통	1.0	연결 녹지, 경관 녹지, 유희지(학교, 우수지, 자투리 땅 등) 녹화
		복잡	1.1	가로변 녹지(정원형)
주제형 사업	1.2	단순	0.9	야영장(일반, 자동차), 둘레길 사업(자연형), 하천경관 개선사업, 생태통로
		보통	1.0	테마시설 조성 사업, 관광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 가로 환경개선 사업(도시형), 농어촌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자연공원(공원시설)
		복잡	1.1	관광단지, 동물원, 골프장, 스키장, 2종 이상의 주제형 사업이 복합된 사업

주 1) 대상지 성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1] 대상지 성격의 정의’ 를 참조한다.



▶ **제4장 기본 및 실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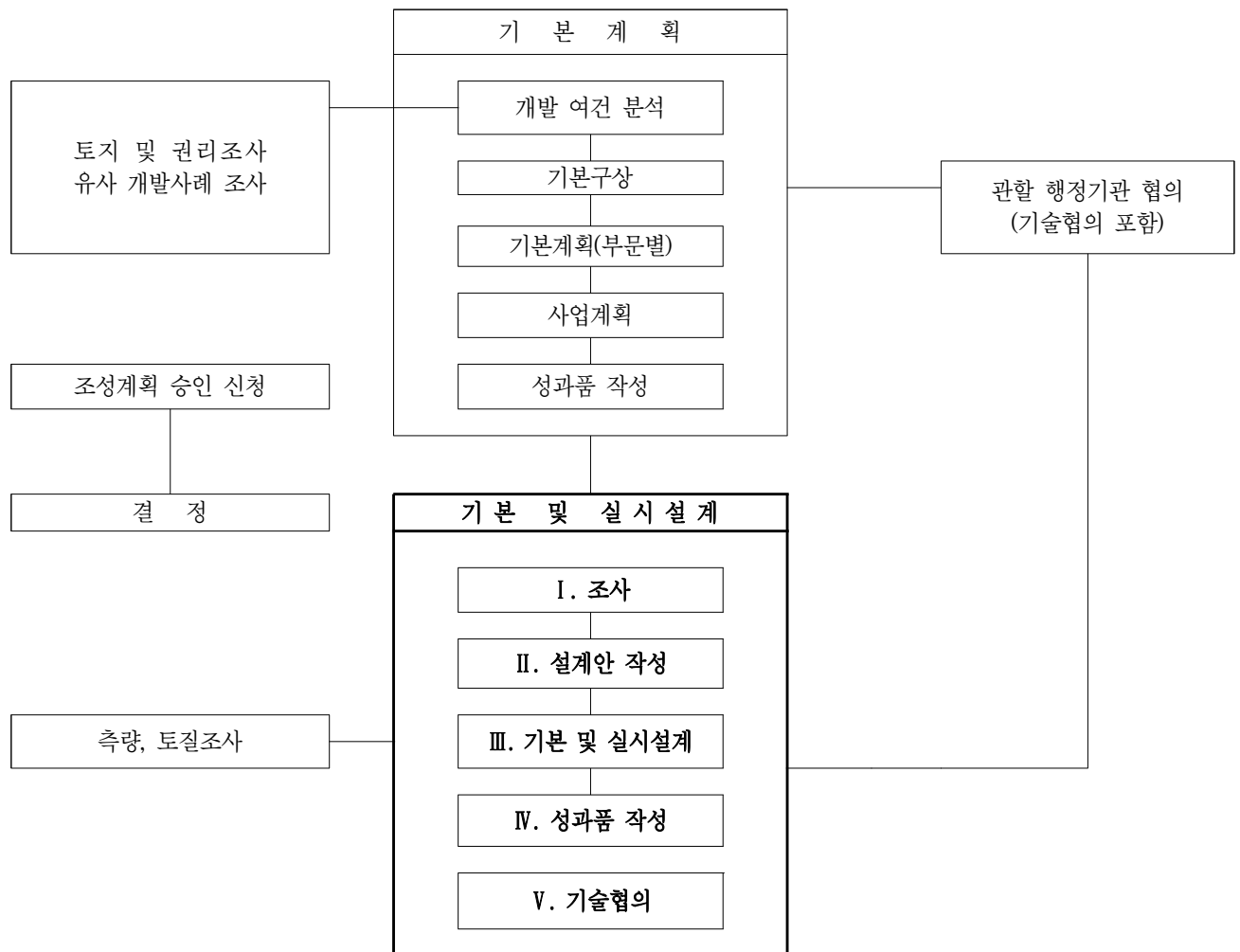
제 4 장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정의

조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란 도시공원,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녹지, 주체형 사업 등 대상지 성격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Master Plan)을 바탕으로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기본설계와 그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과정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4호를 의미한다.

나. 추진절차

조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된다.



다. 업무별 주요내용

기본 업무		업무 정의
I. 조사	1. 각종 조사 등	1) 현지 조사 및 답사 2) 자연 환경조사·분석 3) 인문 환경조사·분석 4) 유사 사례 조사·분석 5) 종합분석
II. 설계안 작성	1. 대안작성 · 선정	1) 도입 활동 및 시설선정 2) 공간 배치구상 3) 대안 작성·비교 검토·확정 * 대안작성·선정업무는 기본설계 등 전 단계 업무의 유·무에 따라 산정한다. 전 단계 성과가 있을 경우 대안작성·선정업무의 70%를 적용한다.
III.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반 설계	1) 지형 및 가시설 설계 2) 상하수 설계 3) 가로등(공원 등), 통신설비 설계
	2. 식재 설계	1) 대상지 성격에 따른 여건 분석 및 식재 공법 선택 2) 식재 구상도(개념도) 작성 3) 수목 선정 및 배식 설계 4) 지피·초화류 선정 및 배식 설계
	3. 시설 설계	1) 공간별 상세 설계 2) 조경시설물 설계 3) 조경구조물 설계
	4. 포장 설계	1) 대상지별 포장재료·공법 선정 2) 포장 설계
	5. 기본공사비 산출	1) 기본수량 산출 2) 기본공사비 산출
IV.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2.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1) 설계설명서 및 예산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설계내역서 5) 단가산출서 6) 수량산출서
V. 기술 협의	1. 위원회 심의 지원	1) VE 심사, 기술심의, 시·도 심의,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심의자료 작성 및 보고 2) 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 반영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1) 공청회·주민 설명회 등 자료 작성 2)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3. 관계기관 협의	1) 발주자 협의 및 민원 검토

주 1)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농지 협의 등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준용한다.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은 2회 기준이며, 횟수 증가에 따라 비용을 가산한다.

3) 조사측량, 토질조사, 시험품은 별도 계상한다.

4) 업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품(조감도, 영상제작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계상한다.

5) 업무 정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2] 세부 업무의 정의’ 를 참조한다.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기준인원수)

기본 업무	단위	기준인원수(인·일/단위)					환산 계수	보정계수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대상지 성격	난이도	
I. 조사	1. 각종 조사 등	5,000(m ²)	1.3	3.0	5.5	5.5	4.6	α ₁	-	-
II. 설계안 작성	1. 대안작성·선정	5,000(m ²)	7.5	11.5	9.3	6.1	4.2	α ₁	α ₂	α ₃
II.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반 설계	5,000(m ²)	1.9	3.5	6.2	5.1	3.3	α ₁	α ₂	α ₃
	2. 식재 설계	5,000(m ²)	3.5	5.5	8.4	5.4	3.9	α ₁	α ₂	α ₃
	3. 시설 설계	5,000(m ²)	2.8	6.4	9.0	8.1	6.1	α ₁	α ₂	α ₃
	4. 포장 설계	5,000(m ²)	1.2	3.0	5.4	5.5	4.4	α ₁	α ₂	α ₃
	5. 기본공사비 산출	5,000(m ²)	1.9	3.0	5.1	4.5	3.2	α ₁	α ₂	α ₃
III.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5,000(m ²)	2.5	4.2	7.0	6.2	4.5	α ₁	α ₂	α ₃
	2.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5,000(m ²)	3.0	7.3	9.0	7.1	4.6	α ₁	α ₂	α ₃
IV. 기술협의	1. 위원회 심의 지원	1식	2.8	4.4	5.7	4.1	3.5	-	-	-
	2.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2회	1.6	3.9	4.8	3.8	3.0	-	-	-
	3. 관계기관 협의	1식	3.2	5.5	5.4	3.6	2.2	-	-	-

주 1) 기본계획 등 전 단계 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 ‘1. 대안작성·선정’ 업무의 70%를 적용한다.

마.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투입인원수는 기준인원수에 사업면적을 고려한 환산계수와 대상지 성격 및 업무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1) 환산계수

$$\text{환산계수}(\alpha_1) = \left(\frac{\text{면적}^*}{5,000m^2}\right)^{0.4}, \text{ (면적이 } 5,000m^2 \text{ 이하에서도 적용)}$$

* 면적이란 조경 설계(설계안 작성, 기반·식재·시설·포장 등)에 의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말한다. 단, “I.조사” 업무의 면적은 각종 조사 등을 수행하는 면적으로 한다.

(2) 보정계수

보정계수			세부 내용	
대상지 성격(α ₂)	업무 난이도(α ₃)			
도시공원	1.0	단순	0.9	소공원, 묘지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광장, 도시공원 내 시설(시설물, 구조물, 포장 등) 교체사업
		보통	1.0	국가도시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유원지, 공공공지, 광장(재생사업)
		복잡	1.1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방재공원, 도시공원(재생사업)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	보통	1.0	공동주택 조경
		복잡	1.1	주택정원, 건축물 조경, 옥상조경(옥상정원), 실내조경(실내정원)
녹지	0.8	단순	0.9	완충 녹지, 가로변 녹지(띠녹지 등)
		보통	1.0	연결 녹지, 경관 녹지, 유희지(학교, 우수지, 자투리 땅 등) 녹화
		복잡	1.1	가로변 녹지(정원형)
주제형 사업	1.2	단순	0.9	야영장(일반, 자동차), 둘레길 사업(자연형), 하천경관 개선사업, 생태통로
		보통	1.0	테마시설 조성 사업, 관광지, 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 가로 환경개선 사업(도시형), 농어촌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자연공원(공원시설)
		복잡	1.1	관광단지, 동물원, 골프장, 스키장, 2종 이상의 주제형 사업이 복합된 사업

주 1) 대상지 성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록 1] 대상지 성격의 정의’ 를 참조한다.



▶ **부 록**

[부록 1] 대상지 성격의 정의

[부록 2] 세부 업무의 정의

[부록 1] 대상지 성격의 정의

구분	세부 내용
<p>1. 도시공원</p>	<p>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에 따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p> <p>1) 국가도시공원: 본 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p> <p>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p> <p>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p> <p>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p> <p>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p> <p>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p> <p>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p> <p>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p> <p>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p> <p>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p> <p>1.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에서 규정한 시설 중 다음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p> <p>1) 보행자전용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규칙 제9조)</p> <p>2) 광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규칙 제49조)</p> <p>3) 유원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규칙 제56조)</p> <p>4) 공공공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규칙 제59조)</p> <p>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은 아니나 과업의 성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유사한 경우 도시공원으로 봄</p> <p>예) ○○ 공원화 사업</p>

구분	세부 내용
<p>2.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p>	<p>2.1 「주택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하며,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따른 조경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에 규정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및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따른 도로(이하 “조경 등의 사업”)</p> <p>1)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p> <p>2) 공동주택 내 조경사업(이하 “공동주택 정원”이라 한다.)은 다음을 포함</p> <p>가) 조경: 공동주택 내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p> <p>나) 주민운동시설: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p> <p>다)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하는 터</p> <p>2.2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및 제42조 제2항 에서 위임한 「조경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p> <p>1) 대지의 조경 사업 종류</p> <p>가) 주택정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건물 내외부에 조성하는 조경사업</p> <p>나) 건축물 조경: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구분된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 내외부에 조성하는 조경사업</p> <p>- 제1·2종 근린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동종동향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p> <p>2) 조경사업의 내용</p> <p>가) 조경: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p> <p>가) 다음은 사업은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사업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도 있고, 별도로 발주할 수도 있는 사업이다. 벽면녹화와 인공지반조경에 대한 보정계수는 대상지 성격에 준하여 적용한다.</p> <p>- 벽면녹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p> <p>- 인공지반조경: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 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p> <p>- 옥상조경: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p> <p>2.3 「주택법」 제2조에 규정된 공동주택 내 설치된 조경 등의 사업은 아니나, 과업의 성격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에 따른 조경사업과 유사한 조경 등의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사업으로 봄</p> <p>예)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에 따른 공개 공지</p> <p>인공지반조경 및 옥상조경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발코니 등 실내에 조성되는 실내조경 (또는 실내정원)</p>

구분	세부 내용
3. 주제형 사업	<p>3.1 테마시설 조성사업</p> <p>1) 각 부지의 관련법에 따라 시설로 설치하는 사업(관련법 상 설치가 불허되는 부지에는 설치 불가)</p> <p>2) 관광객의 집객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인기 있는 시설 등을 공원, 관광지 내 또는 주변, 별도의 장소에 조성하는 사업</p> <p>3) 사례: 물놀이장,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잔도, 짚라인, 모노레일, 복합모험놀이시설 등</p> <p>3.2 관광지 조성사업</p> <p>1) 「관광진흥법」 제23조(정의)에 규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규정된 야영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p> <p>2) 종류</p> <p>가)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p> <p>나)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p> <p>다) 일반야영장: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장소</p> <p>라) 자동차야영장: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장소</p> <p>3.3 관광지 활성화사업</p> <p>1)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에 따르는 사업</p> <p>2) 사례: 관광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기존의 조성계획과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p> <p>3.4 관광자원화사업</p> <p>1) 위치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개발행위허가, 하천법 등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적용을 통하여 설치</p> <p>2) 관광진흥법 상 관광지로 지정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나 개별법(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을 설치하는 사업</p> <p>3) 사례: 빙벽장 및 주변 부대시설(주차장, 상점),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이용한 소규모 관광지원사업 등</p> <p>3.5 둘레길사업(자연형)</p> <p>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으로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는 없으나,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는 도로점용</p> <p>가) 산지에 별도의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는 산지전용 등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시행하는 사업</p> <p>2) 지자체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 조성사업</p> <p>3) 사례: ○○시 둘레길 사업, 제주 ○○길 사업 등</p> <p>3.6 가로환경 개선사업 (도시형)</p> <p>1) 「경관법」 제16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p> <p>2) 도로점용 시 도로 점용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타 관련법 적용이 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음</p>

구분	세부 내용
	<p>3) 낙후된 구도심의 골목길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의 건축물, 간판을 비롯한 가로장치물 등 개선사업</p> <p>4) 사례: 수원 ○○길 사업, ○○삼거리 경관개선사업, 각종 가로환경개선사업 등</p> <p>3.7 하천경관 개선사업</p> <p>1) 하천법에 따라 시행하는 경관 및 환경보전 또는 개선을 위한 사업</p> <p>2) 선형으로 이루어진 하천의 고수부지와 제방, 저수로를 중심으로 하천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p> <p>3) 사례: ○○하천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p> <p>3.8 농어촌 관광휴양지 조성사업</p> <p>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다음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p> <p>2) 종류</p> <p>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p> <p>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 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p> <p>3.9 농촌활성화사업(농어촌경관개선사업)</p> <p>1)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2) 가로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개별시설들에 대한 개별법을 적용(건축법, 도로점용 등)하며, 가로환경개선 사업이나 경관설계의 농어촌지역(읍·면 단위)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소규모 읍·면 단위의 일부 시설 개선이나 마을길 개선, 마을회관 조성,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p> <p>3)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p> <p>4) 사례 : ○○군 농촌활성화사업 등 각 지자체의 읍면 대상으로 사업을 하거나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여 사업 시행</p> <p>3.10 소도읍 육성사업</p> <p>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수립)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2)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건환경, 도시공원, 교육과 문화의 진흥 등 주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주로 대상이 되며, 사업에 따라 해당되는 개별법을 적용</p> <p>3) 사례 : ○○군 소도읍육성사업 ○○ 실시설계 등과 같이 각 지자체의 소도읍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p>

구분	세부 내용
	<p>3.11 어촌뉴딜</p> <p>1) 「어촌·어항법」 제47조의 3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p> <p>2) 어촌뉴딜사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되며, 특히 어항 주변 및 어촌의 재생을 위한 사업들이 주 대상</p> <p>3) 사례 : ○○항 어촌뉴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리 어촌뉴딜사업(00마당 조성) 실시설계 등</p> <p>3.12. 생태통로 조성사업</p> <p>1) KDS 34 70 40 1.2(용어정의)에 규정된 생태통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p> <p>2) 생태통로: 도로, 댐, 수중보와 같은 건설사업으로 인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돕거나 생태계의 단절 완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생태적 공간</p> <p>3.13 동물원 조성사업</p> <p>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규정된 동물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p> <p>2) 동물원: 야생동물 등을 보전·증식하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시·교육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p> <p>3.14 체육시설</p>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체육시설 중 대형 체육시설. (아래와 같이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소형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중 체육공원을 적용</p> <p>가) 소형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톨러스케이트장, 야구장, 축구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체육시설</p> <p>나) 대형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종합체육시설</p> <p>3.15 자연공원(공원시설)</p> <p>1)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제10호에 규정된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p> <p>2) 공원시설: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 제2조(공원시설)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p> <p>3)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p> <p>가) 공원관리사무소·창고(공원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공설수목장림·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나) 사방·호안·방화·방책·방재·조경 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p>

구분	세부 내용
	<p>다) 2의2.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복원을 위한 시설</p> <p>라)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p> <p>마)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p> <p>바)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운수시설</p> <p>사)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점(유홍주점은 제외한다),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p> <p>아)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p> <p>자)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p> <p>3.16 기타 주제형 사업</p> <p>1) 상기에 열거된 주제형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본 주제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 주제형 사업으로 본다. 보정계수 등은 상기 주제형 사업과 가장 근접한 사업의 것을 적용한다.</p>
<p>4. 녹지</p>	<p>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에 따른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p> <p>1)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p> <p>2)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p> <p>3)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p> <p>4.2 유희지 녹화</p> <p>1) 학교 내 공지, 우수지, 자투리 땅 등의 유희공간에 녹화를 하는 녹지. (유희지: 쓰지 않고 묵히는 땅)</p> <p>4.3 가로변 녹지</p> <p>1) 띠 녹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녹지는 아니나 차도와 차도, 차도와 보도(또는 자전거도로), 보도와 자전거도로 등 토지이용이 다른 선형의 경계부 또는 가장자리 등에 선형으로 설치하는 녹지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녹지</p> <p>2) 정원형: 띠 녹지 또는 띠 녹지와 유사한 형태로서, 녹지 내에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 점경물(항아리, 돌담, 석연지, 조경석 등)을 도입하여 정원형태로 조성하는 녹지</p> <p>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녹지는 아니나 과업의 성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와 유사한 경우 녹지로 봄</p>

구분	세부 내용
<p>※ 개선 및 재생사업</p>	<p>1. 단순(교체사업)</p> <p>1) 조경시설물, 조경구조물 또는 조경 포장 등을 단순 교체하는 사업 가) 기존 시설물·포장을 철거하고,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물·포장재를 선정하고 설치하는 사업 2) 사례: ○○근린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사업, ○○어린이공원 바다·포장 교체사업</p> <p>2. 보통(개선사업)</p> <p>1) 노후화된 공원 등 사업대상지의 일부 또는 전면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가) 대상지 내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철거된 공간은 전면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2) 사례: ○○근린공원 개선사업</p> <p>3. 복잡(재생사업)</p> <p>1) 산업 이전 적지, 미군기지, 철도 등 이전 적지를 도시공원 등 조경공간 및 조경시설지로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가) 계획 및 설계개념에 따라 대상지 내 기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개량 및 활용하여 조경 시설지로 조성하는 사업 2) 사례: 경의선숲길, 서서울호수공원, 서울로 7017 등 * 이전 적지: 학교, 공장 따위의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p>

[부록 2] 세부 업무의 정의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조사	각종 조사 등	<p>1) 현지 조사 및 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 하여야 하며, 과업 성격상 필요에 따라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p>가) 측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의 경계측정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한다. - 삼각측량, 수준측량, 현황측량을 수행한다. - 측량 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정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p>나) 지질 및 지반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 (http://www.geoinfo.or.kr) · (서울시)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표층지반, 암질, 지질구조, 지표수 및 지하수를 조사하여야 한다. <p>2) 자연환경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역의 기상 및 기후, 지형, 토양 및 지질, 식생, 서식처, 야생동물, 경관, 수계 등을 주로 정부통계자료 및 문헌(통계연보, 생태·자연도,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도시생태현황지도, 비오톱지도, 토양도, 식생도, 녹지자연도 등 기 조사된 자료)을 통하여 조사·분석한다. - 식생조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존 또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기존 식생의 조사·분석 및 식생이식, 수목의 활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토양조사항목으로는 입도분석(토성), 치환성염기, 유기질, 전질소,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CEC), 토양산도(pH), 염분농도 등이 있다. 토양조사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량의 시험구를 정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p>3) 인문환경조사·분석</p> <p>가)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는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정의 적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유원지, 경관형성 등 각종 주제형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경관법」, 「관광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규정을, 도시공원·녹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정을, 건물에 부속된 조경은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경기준」 등 관련법규정을 검토한다. - 조경설계기준, 조경표준시방서 등 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마련한 KDS 34 00 00, KCS 34 00 00 등을 검토한다. 나) 계획지역의 지역사회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교통 및 동선, 관광·위락환경, 주변 공원 및 녹지의 분포 등을 주로 정부통계자료 및 문헌(통계연보, 도시계획도, 공원녹지기본계획, 공원 및 녹지의 분포 현황자료 등)를 통하여 조사한다. 다) 지장물 및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한다. - 사업 시행에 저촉되는 지상 지장물(철탑, 고압전기선로, 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 <p>4) 유사사례 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과업대상지와 유사하게 조성된 사례지를 조사·분석한다. <p>5) 종합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항목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잠재력을 도출토록 한다. - 장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규정하여 적절한 대안을 도입할 수 있는 분석을 한다.
설계안 작성	대안작성 · 선정	<p>1) 도입활동 및 시설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도입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구상을 하여야 한다. <p>가) 이용자 수요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이용자 수 추정 - 적정수용능력 추정 - 최대일일 및 회전을 적용한 주요시설 규모산정 <p>예) 소요면적 = 최대시이용객(인) × 이용율 × 회전율 × 경제적이용율 × 1인당소요면적(m²/인)</p>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p>나) 도입시설의 선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도 대비 적정 도입가능 활동 및 도입고려시설 도출 <p>예) 경사도 10% 이하 : (도입 가능 활동) 모임, 관람, 대화, 휴식, 운동 등. (도입 고려 시설) 광장, 건축물, 수공간,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p> <p>경사도 10~20% : (도입 가능 활동) 놀이, 산책, 운동, 휴식 관람 등. (도입 고려 시설) 운동시설, 자연학습원, 산책로, 전시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의 이미지 제고, 자연자원의 활용 및 개발, 여가 성향, 기존 이용행태의 수용,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도입활동 및 시설선정 <p>다) 도입시설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준을 근거로 하여 도입시설을 선정한다. <p>2) 공간 배치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시설을 심미성·기능성·이용성·경관성·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정하고, 대상지에 적절히 배치한다. <p>3) 대안 작성·비교 검토·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된 개발 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대안(구상안)을 작성한다. -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 대안을 작성해서 비교·검토 후 선정한다.
설계	기반 설계	<p>1) 지형 및 가시설 설계</p> <p>가) 지형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지형 설계는 원지형을 보전하거나 가급적 훼손되기 이전의 지형으로 되돌리는 것을 우선 고려하며, 친환경성을 위해 다양한 지형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p>나) 식재기반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기반 조성설계는 대상 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 선행 토목, 건축공사 등의 결과로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된 경우에는 식재기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 표토는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본 조경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중 및 공정에서는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 방수·방근, 인공 토양 도입 등을 검토한다.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p>다) 가시설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구간의 주변 산림 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붕괴, 파손, 과도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공사 중 홍수 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p>2) 상하수 설계</p> <p>가) 급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수시설은 효과적인 관수를 위하여 관수설비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수시설을 설치한다. - 사용용수는 상수와 우수 등을 사용하며, 우수를 사용하더라도 우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p>나) 우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구역 <p>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계획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도 분수령(分水嶺) 유수의 흐름이 서로 반대로 갈라지는 경계선이 되는 산마루)에 둘러싸인 상류 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와 하류 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p> - 표면배수관의 배치 <p>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p> <p>대상지 여건에 따라 침투시설의 도입 및 저영향개발 기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p> <p>* 저영향개발 기법(LID : Low Impact Development)</p> <p>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개발하는 것이다.</p> <p>대표적인 저영향개발 기술 요소에는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이 있으며, 각 기술 요소의 주요 내용은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2013.04. 한국환경공단)을 참조한다.</p> - 관리사무소, 화장실, 수경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오염수 발생 시 우수관을 배치하고 대상지 외부 우수관망에 연결한다. <p>3) 가로등(공원등), 통신설비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배치도 (실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 가로등, 통신설비 등) - 전기설계의 강전 약전의 설계는 모든 전기관계 법규, 통신관계 법규에 적합한 설계이어야 한다.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식재 설계	<p>1) 대상지(자연지반, 인공지반, 벽면, 생태습지, 비탈면, 가로수식재 등)별 특성에 따른 여건 분석(음양성·건습성 등) 및 식재 공법별 설계</p> <p>가) 수목식재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 시 교목, 관목, 지피류를 수직방향으로 상층, 중층, 하층 식재로서 녹피율을 재고시키고, 현장 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 식재 한다. -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생태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p>나) 잔디식재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디광장, 경기장 등의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 요인이 큰 지역의 잔디 지반은 특별히 조성되어야 한다. <p>다)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p>라) 비탈면 녹화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 -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한다. <p>마) 벽면녹화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녹화공은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입면을 식물소재로 피복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경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식수대의 형태, 규모, 재료 등을 선정해 식물생육의 최소 유효토심을 확보한다. <p>바) 인공지반 녹화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하중은 적재하중을 우선 검토하여 녹화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물의 적합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적재하중 이내에서 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대상지역에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옥상녹화시스템(단열층, 방수층, 방근층, 보호층, 배수층, 토양필터층, 토양층, 식생층 등)을 도입한다. <p>사) 이식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 본 기준에 적용되는 나무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재어서 결정한다. - 보호수 및 노거수 등 대형수목의 이식은 활착률을 고려하여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운반방법 등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p>아) 가로수 식재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기본계획이 있을 경우(예;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준수하고, 보도의 폭, 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 위치, 규격 등을 검토 한다. - 설계 시에는 보도 유효폭에 따라 보행동선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로등과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지하고 등을 검토 반영한다. - 노선, 가로유형, 내공해성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가로수 배치간격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한다. <p>2) 식재구상도(개념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하는 설계목표에 맞도록 현황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식물군의 기능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식물재료의 건축적 기능, 기후 조절적 기능, 공학적 기능, 미적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 다이어그램은 초점식재, 경계식재, 녹음식재, 경관식재, 차폐식재, 강조식재, 유도식재, 방풍·방음식재 등으로 구분하고 설계개념(다이어그램별 주요 도입수종, 연출 방법, 개요 등)을 도면상에 기재한다. <p>3) 수목(지피·초화류) 선정 및 배식 설계</p> <p>가) 수종선정의 기초적 고려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목 시의 고유 수형과 식재 당시의 수형과 크기 - 잎과 줄기, 꽃, 가지의 상태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질감과 경관미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 색채 - 식물에서 발산되는 향기 - 수목의 맹아, 신초, 개화, 결실, 단풍, 낙엽 등의 계절적 현상 - 수목의 성장도, 맹아성, 이식에 대한 적응성을 나타내는 수세 등 <p>나) 환경과의 관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의 천연 분포, 식재분포와 관련된 기온 -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광선요구도 -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과 토양수분, 양분, 토양산도, 토양 유기물, 표토의 깊이 등과 관련되는 토양에 대한 요구도 -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나 염해, 풍해, 설해 등 각종 환경피해에 대한 적응성 등 <p>다) 배식은 수목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여, 아래의 다양한 양식을 기초로 주변 자연 및 인공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형식 식재 양식: 단식, 대식, 열식, 교호식재, 집단식재 등 - 자연풍경식 식재 양식: 부등변삼각형 식재, 임의 식재, 모아심기, 무리심기, 배경식재 등 - 자유 식재: 필요에 따라 정형식이나 자연풍경식을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새로운 식재형식을 창조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 설계</p>	<p>1) 일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준코드 설계기준 중 조경시설(KDS 34 50 00), 생태조경(KDS 34 70 00), 조경 기타시설(KDS 34 80 00)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별 상세설계, 조경시설물설계, 조경구조물설계로 분류하고, 세부업무를 설정한다. 본 세부업무 정의에 기술되지 않은 시설(공간별 상세설계, 조경시설물설계, 조경구조물설계)의 업무 내용 등은 건설기준코드 조경설계기준(KDS 34 50 00, KDS 34 70 00, KDS 34 80 00)을 준용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에 있는 시설내용을 포함하되, 건설기준코드 조경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시설을 분류한다. 단, 본 설계 품셈에서 단위사업(스키장, 골프장 등)으로 분류된 시설과 건축물은 제외한다. <p>2) 공간별 (상세)설계</p> <p>가) 운동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시설은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운동시설은 규정에 적절한 규격과 이용자의 요구도 등을 고려하며, 운동공간에 부합되는 운동 부속시설 (베드민턴 지주 및 네트, 축구골대)과 포장재 (화강 풍화토, 인조잔디 등)를 선정하여 설계한다. -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운동시설의 배치 시 고려사항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경기조건,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주위 경관과의 조화, 시설의 유지관리) <p>나) 휴게공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은 이용자의 행태, 동선 및 주변 공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며, 적절한 휴게시설물(피걸러, 의자 등), 조경포장 및 녹음수 등과 연계하여 설계한다. - 휴게시설의 배치 시 고려사항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휴게조건,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주위 경관과의 조화, 시설의 유지관리) <p>다) 생태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정화, 야생동물서식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습지, 대체습지, 생태연못, 소생물권과 기타 훼손된 자연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하여 생태못 및 인공습지를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생태적 질서를 창출하거나 원래의 질서에 근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과 공법 <p>3) 조경시설물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게시설, 안내시설,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및 인조암, 조경관리시설, 경관조명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 조경시설물은 고유의 특성과 기능에 더하여 점경물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 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p>4) 조경구조물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앉음벽, 장식벽, 계단, 울타리, 담장, 야외무대, 스탠드 및 이와 유사한 경관구조물을 대상으로 한다.
	포장 설계	<p>1) 대상지별 포장재료·공법의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포장, 자전거도로 포장, 차도 및 주차장 포장 등을 포함한다. - 흙포장(화강풍화토 포장, 혼합토 및 경화토 포장, 황토포장, 놀이터 모래갈기 등), 조립블록포장(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등), 조경일체형포장(판석포장, 사교석포장, 석재타일포장,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호박돌포장, 칼라세라믹포장, 우레탄포장, 고무탄성재포장, 인조잔디 등) 및 이와 유사한 포장재를 공간의 성격, 이용성, 경관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여 패턴계획 및 포장설계 등을 한다. <p>2) 포장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설계는 필요 강도에 적합한 재료선정 및 구조설계와 같은 물리적 요소와 포장 평면의 패턴 및 문양과 같은 조형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포장의 여러 조건과 기능 및 효과를 충족시켜야 한다. - 포장은 색채·질감·형태·척도 및 주변 시설과의 조화 등 여러 조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포장공간 및 시각적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설계한다.
	기본공사비 산출	<p>1) 기본수량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의 수량은 공종 별 표준 단면에서 산출되는 주요 재료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p>2) 기본공사비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의 공사비는 산출된 기본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성과품 작성	보고서	<p>1) 기본설계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설계 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계획, 기본설계, 기본사업비를 말한다. 공사개요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업무를 포함하고, 조사는 자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종합분석을 포함한다. 기본설계는 설계기준 설정, 측량, 토공, 배수공, 식재공, 조경시설물공, 포장공 및 기타업무를 포함하고, 개략공사비를 포함하며, 부록은 설계과정에서 검토된 각종 자료, 기술심의, 자문, 업무협의, 관계기관협의자료, 주민설명회 등 업무를 포함한다.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p>2) 실시설계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보고서는 기초조사, 현지조사, 계획, 실시설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부록은 설계과정에서 검토된 각종 자료, 기술심의, 자문, 업무협의, 관계기관협의자료, 주민설명회 등 업무를 포함한다. <p>3)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는 공사개요,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및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부록은 설계과정에서 검토된 각종 자료, 기술심의, 자문, 업무협의, 관계기관협의자료, 주민설명회 등 업무를 포함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설계 도서</p>	<p>1) 설계설명서 및 예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설명서 및 예산서는 설계설명서와 설계내역서 작성 업무를 말한다.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및 개요, 위치, 공사 기간, 사업 규모 및 사업량, 재료원, 설계변경조건 등을 포함하며, 설계내역서는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을 포함한다. <p>2) 공사시방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조경표준시방서: KCS 34 00 00) -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 서울특별시: SMCS 34 00 00, 한국토지주택공사: LHCS 34 00 00, 철도건설공사: KRACS 47 70 70, 한국농어촌공사: KRCCS 67 81 30) -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p>3) 설계도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은 설계도면 편집 및 전산화를 말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등)을 토대로 공사계획도, 기반설계도, 식재계획도, 시설물 및 구조물 상세도, 조경포장 설계도 및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p>4) 설계내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및 기타)

업무 구분 및 정의		세부 업무 정의
		-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 5) 단가산출서 - 단가산출서는 단가설명서, 단가산출서 작성 업무를 말한다. 단가설명서는 단위 당 단가를 구성하는 공종의 작업과 소요장비, 투입재료 등의 품명, 규격, 수량 설명(할증 여부 등)을 포함하며, 단가산출서는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 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등을 포함한다. 6) 수량산출서 - 수량산출서는 공종별 수량산출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공종별 수량에 대한 집계 표, 단위공정별로 상세 수량산출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 한다.
기술협의	위원회 심의 지원	1) VE심사, 기술심의, 시·도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심의자료 작성 및 보고 -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 - 개략공사비 산출 2) 의견 수렴 및 조치사항 반영 - VE심사, 기술심의, 시·도심의,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심의 시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주민 설명회 자료 작성 등	1) 공청회·주민 설명회 등 자료 작성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공청회(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에 의해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설명회 자료(프리젠테이션, 설명자료 등)를 작성한다. 2) 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수렴된 의견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한다.
	관계기관 협의	1) 발주자 협의 및 민원검토 - 사업 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민원 등으로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 집단 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 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